| 금융감독원 | 보 도 자 료 |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|
|---|---|---|

| 보도 | 2026.1.13.(화) 조간 | 배포 | 2026.1.12.(월) |
|---|---|---|---|

| 담당부서 | 민생침해대응총괄국<br>불법사금융대응2팀 | 책임자 | 팀 장 | 김수진 | (02-3145-8285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담당자 | 조사역 | 김태기 | (02-3145-8523) |

# "상장시 대박"이라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? 사기부터 의심! (주의 → 경고)

| ▣ 소비자경보 2026 - 1호 | | | |
|---|---|---|---|
| 등급 | 주의 | 경고 | 위험 |
| 대상 | 금융소비자 일반 | | |

## Ⅰ 경보발령 배경

▶ **(경보 등급 상향)** **신속한 수사의뢰**('25.9.1., 12.11.) 및 **사기이용계좌**에 대한 **금융거래제한**('25.12월) **조치**에도, 새로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**동일 유형**의 **사기 범행**이 **지속**됨에 따라 **경보**를 **상향**↑

▣ '25.6.18. 비상장주식의 "상장임박"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"주의*"를 발령하였으나,

* ('25.6.13.)「비상장주식의 '상장임박'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주의보 발령」

○ 최근까지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피해 민원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**소비자경보 등급**을 "경고"로 한 단계 상향합니다.

▣ 특히, 금번 투자사기는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들로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약정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기대 심리와 피해보상 심리를 이용하고

○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*(FDS)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거래 확인 전화 시 답변할 내용(계약금·생활비 명목의 송금 등)을 사전에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* FDS(FRAUD DETECTION SYSTEM) : 금융회사는 **고액 이체·해외송금·가상자산 출금** 등 **이상거래**로 **의심**될 경우 **자금용도**, **수취인 관계** 등을 확인하여 **거래제한 여부**를 파악

**<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>**

❶ 상장임박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부터 의심
❷ 제도권 금융회사는 1:1 채팅방, 이메일, 문자로 유인하여 개별적 투자권유를 하지 않음을 유의
❸ 비상장회사의 재무현황, 투자위험 등 사업 정보는 투자자가 직접 확인
❹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에서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명심
❺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(금융감독원☎1332, 경찰청☎112)

## Ⅱ 최근 IPO 투자사기의 단계별 주요 행태

※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민원서류를 기반으로 작성

**< 범행수법 >**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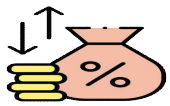 |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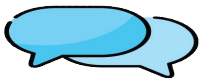 | | | |
| 1 **비상장주식 사전 매집** (1,000@×100,000주) | 2 불특정 다수를 **리딩방**으로 **초대** 후 **상장예정 주식**을 나눠주며 **수익 실현 경험**을 **제공** | 3 **허위상장 정보**를 배포하고 사전 매집한 **비상장 주식**을 주당 **40,000원에 매도** | 4 **제3자로 위장**하여 해당 주식을 **60,000원**에 **매수**하겠다며 **접근** | 5 투자자가 **비상장주식을 추가 매수**하면 이내 **잠적** (다른 종목으로 1부터 반복) |

### 1 (유인) 문자 · SNS 등으로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초대

○ 국내 소형 금융회사 또는 유튜브 투자 전문가를 **사칭**한 불법업체는 **문자· SNS** 등에서 무료로 "급등종목 추천" 등을 해주며 불특정 다수를 **불법 리딩방**으로 초대

- **신뢰 관계 형성**을 위해 **실제 상장예정 주식**을 **무료**로 **입고**(1~5주) 해주며 **소액의 투자 성공** 및 **출금 경험**을 제공

### 2 (현혹) 고수익 실현 및 허위 상장 정보 등을 유포하며 매수를 권유

○ 매수를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"**상장 임박**", "**상장 시 수배 수익**" 및 "**상장 실패 시 재매입** 및 **원금 보장**" 등 고수익 실현과 투자위험이 최소화된 안정적인 투자라며 **기대심리**를 **자극**

- 동시에 **블로그·인터넷 신문사** 등에 **조작된 IR 자료**와 **허위 상장 정보**를 대량 게재하면서 투자자들을 **현혹**

| 인터넷 신문에 허위 상장 정보를 홍보* | 가짜 IR 자료 |
|---|---|
| |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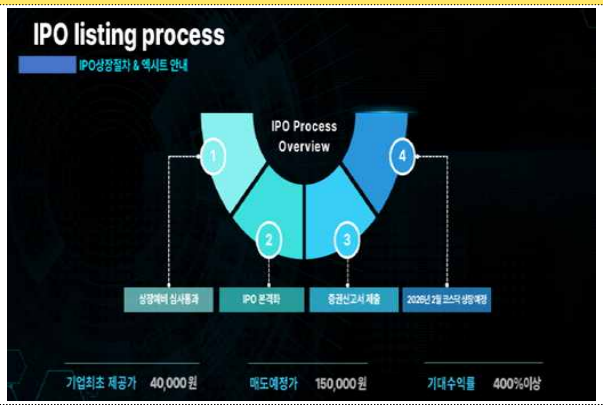 |





* 마케팅 대행 업체 등을 통해 허위 홍보성 기사를 배포

## 3 [바람잡이] 제3자로 위장하여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 후 잠적

○ 불법업체는 **제3자의 투자자** 또는 **대주주로 위장·접근**하여 주식 물량을 확보 중이며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면 **고가**에 **매입**하겠다며 **거액**의 **재투자**를 **유도**

- 한편,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사의 **이상거래 탐지**(FDS)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**본인 거래 확인** 전화 시 답변할 내용(계약금·생활비 명목의 송금 등)을 **사전**에 **세밀**하게 **지시**하는 **치밀함**을 보임

| 대주주로 위장하여 추가 매수 유도 | 금융회사 모니터링 전화에 '거짓 답변' 안내 |
|---|---|
|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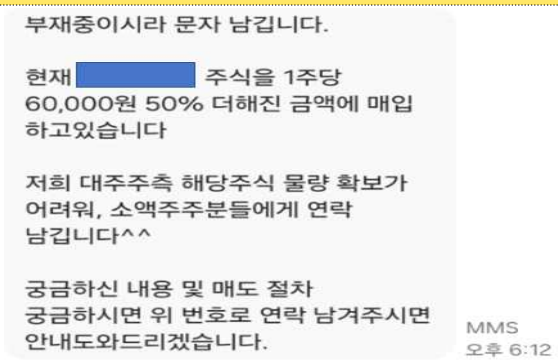 |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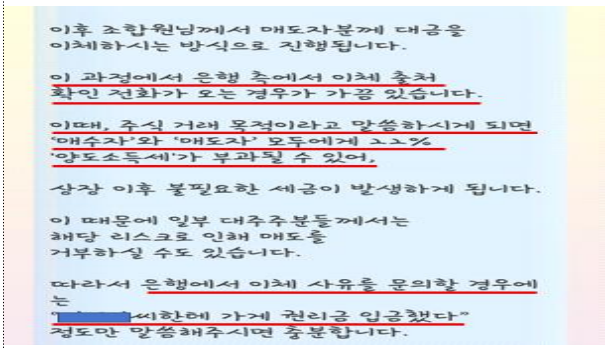 |





## 4 [반복 범행] 비상장주식 종목을 바꿔가며 동일 범행을 반복

○ 민원을 접수한 피해자들의 투자 종목은 달랐으나 범행 형태와 동일한 **"재매입 약정서"**를 **보유**한 사실로 보아 동일 불법업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며 **반복 범행**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

※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사기에 이용된 일부 증권계좌에 대해 신속히 금융거래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('25.12.)

**불법업체가 교부한 허위 '재매입 약정서'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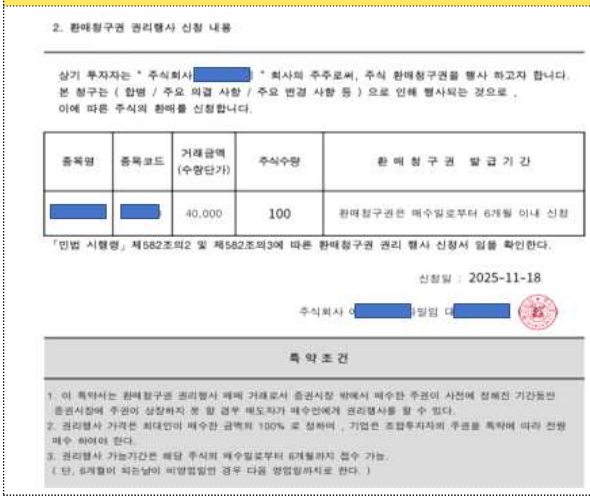

2. 환매청구권 권리행사 신청 내용

상기 투자자는 " 주식회사[redacted] " 회사의 주주로써, 주식 환매청구권을 행사 하고자 합니다.
본 청구는 ( 합병 / 주요 의결 사항 / 주요 변경 사항 등 ) 으로 인해 행사되는 것으로 ,
이에 따른 주식의 환매를 신청합니다.

| 종목명 | 종목코드 | 거래금액 (수량단가) | 주식수량 | 환 매 청 구 권 발 급 기 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[redacted] | [redacted] | 40,000 | 100 | 환매청구권은 매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|

「민법 시행령」 제582조의2 및 제582조의3에 따른 환매청구권 권리 행사 신청서 임을 확인한다.

신청일 : 2025-11-18

주식회사 [redacted]

특 약 조 건

1. 이 특약서는 환매청구권 권리행사 매매 거래로서 증권시장 밖에서 매수한 주권이 사전에 정해진 기간동안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하지 못 할 경우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.
2. 권리행사 가격은 최대한이 매수한 금액의 100% 로 정하며 , 기업은 조합투자자의 주권을 특약에 따라 전량 매수 하여야 한다.
3. 권리행사 가능기간은 해당 주식의 매수일로부터 6개월까지 접수 가능.
( 단, 6개월이 되는날이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. 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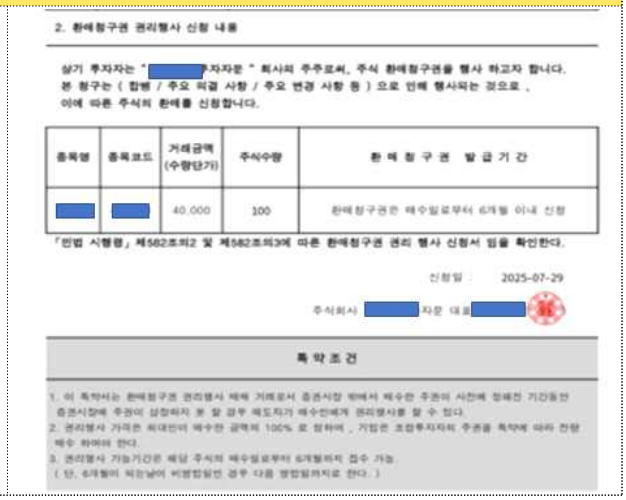

2. 환매청구권 권리행사 신청 내용

상기 투자자는 "[redacted]주자자은 " 회사의 주주로써, 주식 환매청구권을 행사 하고자 합니다.
본 청구는 ( 합병 / 주요 의결 사항 / 주요 변경 사항 등 ) 으로 인해 행사되는 것으로 ,
이에 따른 주식의 환매를 신청합니다.

| 종목명 | 종목코드 | 거래금액 (수량단가) | 주식수량 | 환 매 청 구 권 발 급 기 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[redacted] | [redacted] | 40,000 | 100 | 환매청구권은 매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|

「민법 시행령」 제582조의2 및 제582조의3에 따른 환매청구권 권리 행사 신청서 임을 확인한다.

신청일 : 2025-07-29

주식회사 [redacted]자은 대표 [redacted]

특 약 조 건

1. 이 특약서는 환매청구권 권리행사 매매 거래로서 증권시장 밖에서 매수한 주권이 사전에 정해진 기간동안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하지 못 할 경우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.
2. 권리행사 가격은 최대한이 매수한 금액의 100% 로 정하며 , 기업은 조합투자자의 주권을 특약에 따라 전량 매수 하여야 한다.
3. 권리행사 가능기간은 해당 주식의 매수일로부터 6개월까지 접수 가능.
( 단, 6개월이 되는날이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. )

## Ⅲ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 요령

### 1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

○ SNS 등에서 주식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**증권신고서** 등의 **공시의무**가 부여되므로 DART에서 공시서류가 **조회**되지 않으면 투자에 **유의**

○ 한편,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라면 사업과 관련한 내용 등은 **공시자료***로 **확인 가능**

* 한국거래소 (kind.krx.co.kr) → IPO 현황에서 상장 예비심사 신청 내역 확인
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(dart.fss.or.kr) →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 확인

### 2 제도권 금융회사는 1:1 채팅방, 이메일, 문자로 유인하여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음을 유의

○ **불법업체**와 **거래**로 인한 피해는 **금융감독원**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**피해구제**를 받을 수 없으므로, **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 고객센터**에 연락하여 **사실관계**를 반드시 **확인**

### 3 비상장회사에 대한 정보는 허위 · 과장된 정보일 수 있으므로,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

○ 비상장회사는 **재무현황**이나 **사업구조, 투자위험**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**스스로 회사**의 **실체**를 **파악**하기 위해 **노력할 필요**

### 4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명심

○ 소정의 사례비를 받고 불법업체가 원하는 대로 **인터넷 기사** 또는 **블로그 게시글**을 **작성**해주는 사례가 많음을 **유의**

### 5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(금감원☎1332, 경찰청☎112)

○ 신속한 신고를 통해서만 **범죄수익 은닉**을 **방지**하고 **추가 피해**를 **막을 수 있다는 사실**을 **명심**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**붙 임** **금융감독원 홈페이지 內 불법금융투자 등 신고화면**

1 **(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)**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자 광고 등 불법 대부광고, 불법 금융광고 등 제보·신고

2 **(불법사금융·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)** 유사수신, 고금리 수취,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신고

1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 > 민원·신고)

2) '불법금융신고센터' 클릭

❶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

❷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